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3일 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1일
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○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제6호(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)가 신설됨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고 이· 미용사 신규면허와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액의 표준화를 도모코자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수수료 부과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
○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"(46종)" 을 "(45종)" 으로 하고,
○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란 "(12)" 를 "(13)" 으로 하고, (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
(12)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(1건 3,000원)
○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란 (14),(15)를 각각 삭제.

다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 :
-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7조
-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○ 규제심사 : 행정규제 대상 아님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○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

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는 것이고, 수수료 1건당 3,000원은 유사 항목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3,0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

○ 이 · 미용 신규면허 수수료 삭제안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